

「교원신규임용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11. 9. 1. 개정 판 (시행 2011. 9. 1.) → 2012. 7. 21. 개정 판 (시행 2012. 9. 1.)

바뀜 2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95/compare?from=238&to=239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7:32:17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본 지침은 교육인적자원부 사립교원인사관리지침 및 삼육대학교교원인사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본 지침은 교육부 사립교원인사관리지침 및 삼육대학교교원인사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5조(자격심사) ① 침례를 받은 후 5년 이상 경과자로서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. ② 교육법 고등교육법 제16조, 교육공무원법 제8조,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한 교수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 ③ 원칙적으로 박사학위소지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. ④ 특수분야(예능계, 정관에 정한 특별채용분야)에 한하여 박사학위 과정 중에 있는 자도 심사할 수 있다. ⑤ 심사에 따른 학력, 경력 등의 인정은 학력 및 경력증명서에 의한다. ⑥ 연구실적물(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) 200% 이상 (신설 2005-12-20) ⑦ 교양교직과 영어회화 전담 외국인교원과 신학과의 연구실적물은 학과 자체 규정에 따른다. (신설 2005-12-20)	제5조(자격심사) ① 침례를 받은 후 3년 이상 경과자로서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. <개정 2012-07-21> ② 교육법 고등교육법 제16조, 교육공무원법 제8조,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한 교수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 ③ 원칙적으로 박사학위소지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. ④ 특수분야(예능계, 정관에 정한 특별채용분야)에 한하여 박사학위 과정 중에 있는 자도 심사할 수 있다. ⑤ 심사에 따른 학력, 경력 등의 인정은 학력 및 경력증명서에 의한다. ⑥ 연구실적물(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) 200% 이상 (신설 2005-12-20) ⑦ 교양교직과 영어회화 전담 외국인교원과 신학과의 연구실적물은 학과 자체 규정에 따른다. (신설 2005-12-20)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교원신규임용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교육인적자원부"를 "교육부"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"5년"을 "3년"으로 하고, "한다."를 "한다. <개정 2012-07-21>"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